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보 도 자 료		함께 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일시	2012.8.20.(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19(일) 정오)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배포일시 2012.8.17(금)	담당자	팀 장 성경제 02)2023-4360 사무관 김대영 02)2023-4362	

온라인 쇼핑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공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공포함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
-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
 - * 예시: 의류(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 식품(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 전자제품(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
-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함
-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
 - * 1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를 실효성있게 강화
-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

I**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 고시의 주요 내용****<시행규칙>**

-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규정
 -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함
-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시 설명·고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
 - 기만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설치시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설명·고지

<상품정보제공고시>

- (품목별 정보)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
 -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거래조건 정보)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

<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 >

분류	주요 내용
공급 관련 정보	배송방법, 배송기간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비용(해외구매대행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사유와 근거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절차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품질보증 기준 A/S 관련 전화번호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정보
분쟁처리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불만처리 관련 정보
거래 약관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제공방법)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
-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하고, 그에 준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제조일자	재고상품 중 가장 오래된 상품의 제조일자 또는 전체 상품의 제조일자 범위를 대신 제공할 수 있음
추가 선택 상품	주된 상품에 대하여만 고시 적용

< 가공식품 정보 예시 >

현행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맛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밤 10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품질 좋은 맛밤을 직접 손으로 까서 담아 최고의 맛을 자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맛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밤 10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품질 좋은 맛밤을 직접 손으로 까서 담아 최고의 맛을 자선합니다!</p>																																								
<p>상품 정보</p> <p>원재료명 및 함량 - 밤 100% / 원산지 - 중국 / 내용량 80g</p> <p>⚠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제품에 수분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 과정상 생기는 것이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 밤을 통째로 삼키시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제품은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한번에 드시 - 봉지에로는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 봉지에 입을 대고 드실 때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p>⚠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p> <p>제조일로부터 6개월</p>	<p>상품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식품의 유형</td> <td>견과류가공품</td> </tr> <tr> <td>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td> <td>제조원: HEBEI LIYUAN FOODS CO.LTD. 소재지: 중국 허베이성 수입판매원: CJ제일제당(주)</td> </tr> <tr> <td>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td> <td>제조일: 2012. 6. 1. ~ 2012. 6. 30.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td> </tr> <tr> <td>포장단위별 용량, 수량</td> <td>내용량 80g</td> </tr> <tr> <td>원재료명 및 함량</td> <td>밤100%(원산지:중국)</td> </tr> <tr>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영양성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제공량(80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제공량 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함량 %영양소 기준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열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 kcal</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수화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30g 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당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9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백질</td> <td style="text-align: center;">3g 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1g 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포화지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0g 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트랜스지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0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콜레스테롤</td> <td style="text-align: center;">0mg 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트륨</td> <td style="text-align: center;">30mg 2%</td> </tr> <tr> <td>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td> <td>해당 없음</td> </tr> <tr> <td>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td> <td>해당 없음</td> </tr> <tr> <td>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td> <td>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td> </tr> <tr> <td>소비자상담 전화번호</td> <td>02-0000-0000</td> </tr> </table>	식품의 유형	견과류가공품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제조원: HEBEI LIYUAN FOODS CO.LTD. 소재지: 중국 허베이성 수입판매원: CJ제일제당(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일: 2012. 6. 1. ~ 2012. 6. 30.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포장단위별 용량, 수량	내용량 80g	원재료명 및 함량	밤100%(원산지:중국)	영양성분	1회제공량(80g)	1회 제공량 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140 kcal	탄수화물	30g 9%	당류	9g	단백질	3g 5%	지방	1g 2%	포화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0%	나트륨	30mg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 없음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해당 없음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02-0000-0000
식품의 유형	견과류가공품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제조원: HEBEI LIYUAN FOODS CO.LTD. 소재지: 중국 허베이성 수입판매원: CJ제일제당(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일: 2012. 6. 1. ~ 2012. 6. 30.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포장단위별 용량, 수량	내용량 80g																																								
원재료명 및 함량	밤100%(원산지:중국)																																								
영양성분	1회제공량(80g)																																								
	1회 제공량 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140 kcal																																							
	탄수화물	30g 9%																																							
	당류	9g																																							
	단백질	3g 5%																																							
	지방	1g 2%																																							
	포화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0%																																								
나트륨	30mg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 없음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해당 없음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02-0000-0000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
 - (과징금 부과 판단 기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 ① 영업정지가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조정) 및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조정) 등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규정

〈 과징금 산정 예시 〉

관련매출액 100억기준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기본산정기준		2.5억	7.4억
1차조정	최소	2.5억	7.4억
	최대	6.25억	18.5억
2차조정	최소	1.25억	3.7억
	최대	8.75억	25.9억

〈신고면제기준고시〉

-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 변경 내용: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현행)

⇒ 최근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 미만 (8.18시행)

II

추진 배경

-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
 -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라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
-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여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제거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

< 피해 사례 >

-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배포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여 1억700만원을 챙긴 사례
-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납치 프로그램을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하여 강제방문을 유도하는 피해 유발

III

기대 효과

-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업자 입장에서라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범위반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 범위반 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범준수 제고에 기여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있는 사업자 신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 등이 무단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V 향후 계획

-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가 8.18일부터 시행 예정
 - 단,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18일부터 시행될 예정

[별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부과기준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

〈별첨 2〉 「상품정보제공고시」 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 2012. 8.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9호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4)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5) 기타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5.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색상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제조연월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 구두 / 신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겹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색상
3. 치수 발길이: 해외사이즈 표기시 국내사이즈 병행 표기(mm) 굽높이 (굽 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에 한함, cm)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3) 가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색상
4. 크기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5) 침구류 / 커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2. 색상
3. 치수
4. 제품구성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 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6) 가구(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2. KC 인증 필 유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3. 색상
4. 구성품
5. 주요 소재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자, 수입자
7. 제조국
*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국
8. 크기
9. 배송·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7) 영상가전(TV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형태포함)
8.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용량, 형태 포함)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9) 계절가전(에어컨 / 온풍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8. 냉난방면적
9. 추가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0) 사무용기기(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무게는 노트북에 한함)
8. 주요 사양 (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 / 프린터의 경우 인쇄 속도 등)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1)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주요 사양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2) 소형전자(MP3 / 전자사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3) 휴대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이동통신 가입조건
7-1. 이동통신사
7-2. 가입절차
7-3.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사항 (가입비, 유심카드 구입비 등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
8. 주요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4) 내비게이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명 및 모델명 2.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유무 (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7. 적용차종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 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명 및 모델명 2. 의료기기법상 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KC 인증 필 유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한함) 4.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9. 취급시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주방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명 및 모델명 2. 재질 3. 구성품 4. 크기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 기구·용기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8)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용량 또는 중량
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3.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4. 사용방법
5. 제조자 및 제조판매업자
6. 제조국
7. 주요성분(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유기농 원료 함량 포함)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사용할 때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소재 / 순도 / 밴드재질 (시계의 경우)
2. 중량
3.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4. 제조국 (원산지과 가공지 등이 다를 경우 함께 표기)
5. 치수
6. 착용 시 주의사항
7. 주요 사양
 - 7-1. 귀금속, 보석류 - 등급
 - 7-2. 시계 - 기능, 방수 등
8. 보증서 제공여부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0) 식품(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4.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관련법상 표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6. 상품구성 7.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1)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7.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9.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정보
1-7. 기능정보
1-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1-9.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0.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1.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3) 영유아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한함)
3. 크기, 중량
4. 색상
5.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6. 사용연령
7.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9. 제조국
10.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11. 품질보증기준
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4) 악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3. 색상
4. 재질
5. 제품 구성
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8. 제조국
9. 상품별 세부 사양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5) 스포츠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중량
3. 색상
4. 재질
5. 제품 구성
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8. 제조국
9. 상품별 세부 사양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6) 서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도서명
2. 저자, 출판사
3. 크기 (전자책의 경우 파일의 용량)
4. 쪽수 (전자책의 경우 제외)
5. 제품 구성 (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등)
6. 출간일
7. 목차 또는 책소개

(27) 호텔 / 펜션 예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국가 또는 지역명
2. 숙소형태
3. 등급, 객실타입
4. 사용가능 인원, 인원 추가 시 비용
5. 부대시설, 제공 서비스 (조식 등)
6.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7. 예약담당 연락처

(28) 여행패키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여행사
2. 이용항공편
3. 여행기간 및 일정
4. 총 예정 인원, 출발 가능 인원
5. 숙박정보
6. 포함 내역 (식사, 인솔자, 공연관람 등)
7.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안내원수수료, 식사비용, 선택사항 등)
8.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9.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10. 예약담당 연락처

(29) 항공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요금조건, 왕복·편도 여부
2. 유효기간
3. 제한사항 (출발일, 귀국일 변경가능 여부 등)
4. 티켓수령방법
5. 좌석종류
6.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7.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8. 예약담당 연락처

(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차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추가 선택 시 비용 (자차면책제도, 내비게이션 등)
4. 차량 반환 시 연료대금 정산 방법
5. 차량의 고장·훼손 시 소비자 책임
6.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1) 물품대여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유지보수 조건 (점검·필터교환 주기, 추가 비용 등)
4.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5.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6. 제품 사양 (용량, 소비전력 등)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2) 물품대여 서비스 (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4.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작자 또는 공급자
2. 이용조건, 이용기간
3. 상품 제공 방식 (CD, 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4.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5.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과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4) 상품권 / 쿠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발행자
2. 유효기간, 이용조건 (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 기준, 사용제한품목 및 기간 등)
3. 이용 가능 매장
4. 잔액 환급 조건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5)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제조국 또는 원산지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1.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가.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나.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2.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1)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에 관한 정보 예시>

고객의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해 상품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 약 \$25 (25,000원)

- ① 기발생한 운송비 (현지에 반송하는 경우에는 왕복운송료)
(예)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 추가 1파운드당 \$3
- ② 수입세금 및 제 비용 (약 \$)

- 나.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3.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가.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 나.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다.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 4.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5.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V.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8. 13.)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